

관세연구19-04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2019. 12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2019. 1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3급(관제사)

목 차

I. 서론	7
II.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및 사례	9
1. 국제협정 및 주요국의 규정	10
가. WTO·WCO	10
나. 우리나라	14
다. 미국	20
라. EU	23
마. 소결	28
2. 주요국의 관련 사례	32
가. 권리사용료 여부 관련 사례	32
나. 관련성 판단 사례	40
다. 배분 방법 관련 사례	47
III.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과세 시 문제점	53
1. 지급방법에 따른 과세방법	53
가. 계약 형태에 따른 가산 요소	53
나. 지급방식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55
2. 수입물품 유형별 안분 방법	57
가.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	57
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완제품의 부분품 등	58
3. 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	60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64
1.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의 정비	64
가. 총지급 권리사용료 의미 명확화	64
나.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 정비	69
2. 간접적인 안분 방법 도입	72
3. 수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77
가. 가산세 감면 허용	77
나. 권리사용료 관련성 판단 기준의 제시	78
 참고문헌	 81

표 목차

〈표 II-1〉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비교	30
〈표 IV-1〉 총지급 권리사용료 개정안	66
〈표 IV-2〉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 개정안	71
〈표 IV-3〉 간접적인 안분 방법 도입안	75

그림 목차

[그림 II-1] 장기간 반복 수입물품의 가산율 산출산식	19
[그림 II-2]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 거래 개요(2015구합12526)	33
[그림 II-3] 관련성 관련 사례 거래 개요(2014누328)	41

I. 서론

- 관세청은 2019년 7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개정하여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수입물품이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권리사용료에 설비에 관련된 방법에 관한 특허의 대가 외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함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서 공제되는 대가는 공정관리·사업관리 노하우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 등을 말함

- 이는 최근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이 수입물품뿐 아니라 공정관리·사업운영·마케팅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임
 -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함
 -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공정관리·사업운영·마케팅 등의 활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함

- 당해 개정은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부 수입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공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음
 -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가 수입되는 경우의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규정만 개정됨에 따라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는 권리 사용료는 공제하지 못함

- 또한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경우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 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방법,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 사용료에서 공제하는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우선 일부 공정을 실시하는 설비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수입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입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한 국내·외 규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의 적절한 산출 및 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사례를 권리사용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산출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관련 규정 및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함
 - 제IV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II.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및 사례

- 수입물품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 우선 당해 대가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지급가격 또는 다른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함

- 다른 활동에 대한 대가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면 권리사용료의 다른 가산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모든 가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다른 활동에 대한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를 당해 대가 및 수입물품과 관련된 대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수입물품과 관련된 대가와 관련 없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금액은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함
 - 그러나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안분·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규정과 사례를 ① 권리사용료 ②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③ 관련 없는 대가의 산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제협정 및 주요국에서 권리사용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없는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나 근거 자료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이런 규정을 실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 발생 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1. 국제협정 및 주요국의 규정

가. WTO·WCO

- WTO는 수입물품의 가치평가에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의 사용을 근절하고, 상업적인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통일되며 중립적인 단일의 관세평가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을 제정함¹⁾
 - 「WTO 관세평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I에 수록된 협정으로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협정임²⁾
-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WTO 관세평가위원회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림³⁾
 - 이를 결정(Decisions),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예해(Commentaries), 해설(Explanatory notes)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음

1) WCO, <http://www.wcoomd.org/en/topics/valuation/overview/wto-valuation-agreement.aspx>, 검색일자: 2020. 2. 4.

2)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p. 39~40.

3) 김기인(2015), p. 42.

- 이러한 결정사항은 WTO 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적 성격을 갖지는 않으나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지침이 됨⁴⁾
 -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결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1) WTO 관세평가협정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래가격이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조정한 가격을 말함⁵⁾
-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임⁶⁾
 - 권리사용료가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려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함
- 권리사용료에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
 - 수입물품을 배포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닌 경우 가산되지 않음⁷⁾
 - 반면 수입국 내에서 수입물품을 복제하는 권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사용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4) 김기인(2015), p. 44.

5)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6)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c)호

7)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8조 제1항 (c)호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⁸⁾
 -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음⁹⁾
 - 만약 권리사용료가 일부는 수입물품에 근거하고, 일부는 수입물품과 관계 없는 다른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함
 - 수입물품이 국내 성분과 혼합되어 별도로 그 성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권리사용료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금융약정에서 구별될 수 없는 경우임
 - 하지만 권리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수입물품에만 근거하고 쉽게 수량화할 수 있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WCO 권고의견 및 예해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을 통하여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
 -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이 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평가대상이 되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제품, 특허에 의해 제작된 물품,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계 등의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봄¹⁰⁾
 - WCO 권고의견 4.1에서는 특허에 의해 제작된 기계, 4.4에서는 특허제품인 농축물이 수입된 경우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함

8)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3항

9)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8조 제3항

10) WCO 권고의견 4.1, 4.3, 4.4, 4.12

- 권고의견 4.3 및 4.12는 특허공법과 관련된 기술이 체화되어 있어 특허공법을 수행하는 기계는 특허공법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권리사용료와 관련 있다고 설명함
- 상표권은 수입물품에 부착되거나 희석 후 부착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보지만, 수입국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음¹¹⁾
 - WCO 권고의견은 상표가 부착된 신발·의류·가방 등이나 농축물이 희석된 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상표사용료와 수입물품이 관련 있다고 봄
 - 이는 희석과 같은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물품과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권고의견 4.9는 특허제조물질을 수입국 내에서 제조·사용·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제조물질의 수입 원재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
- 저작권의 경우 음악 연주가 수록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배포 및 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 있음¹²⁾
 - 권고의견 4.2에서도 음악 연주 레코드판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으나, 판매 계약에 따른 지급이 아닌 수입국의 법률상 의무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이므로 관련성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예해 25.1은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해설에서 권리사용료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권리사용료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수입물품이 지적재산권과 결합되어 있거나 라이선스에 의하여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때임¹³⁾

11) WCO 권고의견 4.6, 4.8, 4.9, 4.10, 4.11, 4.13

12) WCO 권고의견 4.7

13) WCO 예해 25.1

- 수입물품에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상표가 결합되어 있다면,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냄

나. 우리나라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관세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음
 -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의 금액을 더한 가격임¹⁴⁾
-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¹⁵⁾
 - 이와 유사한 권리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임¹⁶⁾
 -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제외함¹⁷⁾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임¹⁸⁾

14) 「관세법」 제30조 제1항

15)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16)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7)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8)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각 권리별로 명시하고 있음

-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봄¹⁹⁾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함)

-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음²⁰⁾
 -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
 -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인정함²¹⁾
 -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19)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20)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21)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있음²²⁾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²³⁾

- 실용신안권 등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등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함²⁴⁾
 -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특허권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특허권 내지 실용신안권 등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에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함²⁵⁾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법 시행령」은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2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23)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24)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7호

25) 「관세법」 제30조 제1항

하고 있으며,²⁶⁾ 이에 따라 「수입물품 관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권리 사용료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달리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 사용료 금액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입물품이 완제품이거나 수입 후 조립·혼합·희석·분류·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²⁷⁾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²⁸⁾
-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함)²⁹⁾

□ 권리사용료의 일부만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와 관련 있는 전체 물품의 가격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권리사용료에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함³⁰⁾
 - 완제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 다음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함

26)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2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호

28)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29)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3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설비에만 관련된 방법에 관한 특허 등의 대가인 경우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권리사용료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³¹⁾
- 권리사용료가 특허 등의 대가 외에 공정관리·사업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한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함³²⁾
 - 특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 중 수입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뿐 아니라 전체 설비 등과도 관련 없는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는 공제함
 - 다만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³³⁾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일부와 관련되는 때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 조정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 가격으로 나누어 가산율을 산출함³⁴⁾
 - 구체적인 가산율 산출산식은 [그림 II-1]과 같음

3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가목

3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나목

33)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

[그림 II-1] 장기간 반복 수입물품의 가산율 산출산식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물품가격}}{\text{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 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
· 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설비가격}}$
다. 수입물품이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 \text{공정관리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권리 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
· 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설비가격}}$

자료: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을 ① 완제품 ②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 ③ 특허를 실시하는 설비 ④ 특허의 일부 공정만 실시하는 설비로 구분하여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특허의 일부 설비 등에 대한 규정은 권리사용료에 전체 방법 또는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만 포함된 경우, 전체 설비 등과 관련된 특허 등에 대한 대가 외에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과 관련된 대가도 포함된 경우로 구분되어 있음
 -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대가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제 후 남은 금액인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일부 설비 등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안분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³⁵⁾

3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나목에서는 가산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금액을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동 고시 제9조 제4호 다목의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일부 공정을 실시하는 설비의 가산율 산출산식과 비교했을 때, 안분 규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 반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에 대하여는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만 규정하고 있음
 - 완제품과 관련 없는 대가도 포함하고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 미국

1) 19 U.S.C. 및 19 CFR

- 미국도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초로 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함³⁶⁾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등을 가산한 가격을 말함³⁷⁾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도록 요구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임³⁸⁾
 - 미국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과 같이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가산 요건으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판매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은 권리사용료의 대상으로 수입물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다루는 특허권,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저작권 및 상표권, 수입물품을 배포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 등을 언급하고 있음³⁹⁾
 - 다만 저작권 및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

36) 19 U.S.C. 제1401a조 (a) Generally

37)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38) 19 U.S.C. 제1401a조 (b) (1) (D)

39) 19 CFR 제152.103조 (c)

- 매자의 판매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음⁴⁰⁾
- 또한 배포 또는 재판매 권리 또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반면 수입물품을 미국 내에서 복제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⁴¹⁾
- 수입물품에 가산되는 금액은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당해 금액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음⁴²⁾
- 충분한 정보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규모와 가산의 정확성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말함⁴³⁾
- 만약 로열티가 일부는 수입물품에 기초하고 일부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다른 요소에 기초하고 있다면 로열티를 가산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함⁴⁴⁾
- 예를 들어 수입물품이 국내 원료와 혼합되어 더 이상 구분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로열티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별한 금융약정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그러나 로열티 금액이 수입물품에 기초하고 있고, 쉽게 수량화할 수 있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General Notices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 CBP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수출판매의 조건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고시함⁴⁵⁾

40) 당해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41) 19 CFR 제152.103조 (c)

42)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43) 19 CFR 제152.103조 (h)

44) 19 CFR 제152.103조 (b) (3)

45) CBP, General Notices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Vol. 27, No.6, Customs

- 미국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가산 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입물품과의 관련 여부는 첫째 및 둘째 질문을 검토하여야 함
-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 지급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로 검토해야 하는 질문은 수입물품이 특허권에 따라 제조되었는지 여부임⁴⁶⁾
 - 특허권에 따른 제조란 특허권에서 다루는 방법 또는 공정에 따라 물품이 생산된 것을 의미함
 - 수입물품이 특허에 따라 제조되었다면 로열티 지급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허에 따라 제조된 것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둘째로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⁴⁷⁾
 - 수출판매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지급 의무를 유발하였다면, 이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된 것임⁴⁸⁾
 - 또한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했다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이 없으면 특허를 받은 물품의 제조자와 계약하거나 국내에서 특허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⁴⁹⁾
 - 해당 질문은 첫째 질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로열티의 비과세를 암시하며, 긍정적인 답변은 로열티도 과세 가능성을 나타냄
- 첫째 및 둘째 질문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당해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Bulletin and Decisions, 1993. 2. 10.

46) General Notices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47) General Notices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48) CBP Rulings HQ H234735, 2014. 6. 23.

49) CBP Rulings HQ W563354, 2010. 10. 27.

- 두 가지 질문 중 하나 이상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 당해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이 미국으로의 수출판매를 위한 조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함

라. EU

1) UCC⁵⁰⁾ 및 The UCC Implementing Act⁵¹⁾

- EU도 「WTO 관세평가협정」과 마찬가지로 UCC(Union Customs Code)에 물품의 관세 평가의 기초는 최우선으로 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²⁾
 - 거래가격이란 EU 관세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한 가격을 말함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지급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산하여야 함⁵³⁾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 UCC에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권리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권리의 대가는 명시하고 있음
 - EU 내에서 수입물품을 복제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음⁵⁴⁾

50) REGULATION (EU) No. 952/2013

5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52) UCC 제70조 제1항

53) UCC 제71조 제1항 (c)

54) UCC 제72조 (d)

- 수입물품을 배포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구매자의 지급은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닌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⁵⁵⁾
- EU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권리의 체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산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⁵⁶⁾
 - 라이선스 또는 로열티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가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경우 로열티와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음
 - 반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님
 - 그러나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파생된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당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의 지급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⁵⁷⁾
 - 수입 후 당해 물품에 추가된 다른 성분 또는 구성요소, 수입 후의 활동 또는 서비스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경우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야 함⁵⁸⁾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와 같은 가산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⁵⁹⁾

55) UCC 제72조 (g)

56) UCC Implementing Act 제136조 제1항 내지 제2항

57) UCC Implementing Act 제136조 제3항

58) UCC 제71조 제2항

2)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및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 EU는 관세 당국 및 이해당사자의 관세평가 법령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및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을 발표하였음⁶⁰⁾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UCC 및 UCC Implementing Act의 조항을 설명하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평가 법령의 해설을 제공함

-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및 Customs Valuation Compendium은 UCC 및 UCC Implementing Act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지급되는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UCC 및 UCC Implementing Act에 따르면 특정 조항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조항이 적용됨
 - 이에 따라 각 지침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지급되는 권리를 「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를 준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란 저작물,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계획, 기밀 방식, 공정, 설비,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⁶¹⁾
 - 흔히 노하우라 일컫는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는 제품 또는 공정을 같은 조건하에서 재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말함⁶²⁾
 - 이는 특허 여부를 불문하며 공표되지 않은 것에 한함

59) UCC Implementing Act 제135조 제2항

60) Taxation and Customs Union,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2016. 4. 28, p. 2; Taxation and Customs Union,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2018, p. 2

61)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2조 제7항

62)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4항

-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얻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제조자의 제품 시험이나 기술 향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 있는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쟁점은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임⁶³⁾
 - 즉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산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급을 대가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수입물품 자체인 경우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와 관련성이 명백함⁶⁴⁾
 - 이 경우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범위의 조사가 필요함⁶⁵⁾
- 수입물품이 라이선스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경우 역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⁶⁶⁾
 - 수입물품이 라이선스 물품의 성분 또는 구성요소이거나 수입물품이 생산설비·산업 플랜트인 경우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⁶⁷⁾
 - 이 경우 라이선스 물품이 판매되는 때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전부 또는 부분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⁶⁸⁾
-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의 관련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서의 심사가 필요함⁶⁹⁾
 -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라이선스 물품·양도된 권리의 성격·제공된 노하우의 상세, 라이선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판매계약의 조건과 판매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함

63)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8항

64)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4조 제12항 내지 제13항

65)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5항

66)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4조 제12항 내지 제13항

67)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5항

68)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8항

69)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3조 제10항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노하우가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면 노하우에 지급되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고려하여야 함⁷⁰⁾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노하우는 디자인, 비법, 공식 및 라이선스 물품 사용을 위한 기초설명을 포함함
 - 그러나 어떤 라이선스 계약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하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의 지급을 포함하기도 함
 -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하거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직원을 훈련하거나 경영, 관리, 영업, 회계 등의 분야의 기술 지원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음

- 이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과 판매계약을 심사할 때에 많은 경우 지급된 로열티의 일부만이 잠정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⁷¹⁾
 - 지급되는 로열티의 일부만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수입자와 관세당국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⁷²⁾
 - 라이선스 계약에서 부여되는 이익에 잠정적인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요소가 혼합된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가 비과세 대상 요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⁷³⁾

- 총 지급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과세 요소와 비과세 요소로 배분하는 기준은 라이선스 계약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드러나지 않음⁷⁴⁾
 - 따라서 권리와 노하우의 각 가격은 노하우가 이전되거나 사용될 범위를 평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또한 수입자와 세관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는 자신의 계산에 기초한 적정 분배의 내역을 준비할 수 있음

70)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식 3. 제6항
 71)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식 3. 제7항
 72)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식 3. 제11항
 73)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식 3. 제7항
 74)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식 3. 제12항

- 추가로 라이선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통신문, 라이선스 계약 작성 전의 내부 협상 보고서, 라이선스 계약의 협상 당사자 중 하나의 논의 서류가 종종 분배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함
- EU는 지침을 통하여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마. 소결

- 우리나라, 미국, EU 모두 WTO 회원국으로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요소로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인 거래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권리사용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고,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모든 주요국은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WTO와 유사하게 대가의 지급대상이 되는 권리별로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이와 달리 미국은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음

-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경우 WTO와 미국은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EU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으나 수입물품이 사용되는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이 있는 대가가 권리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입물품뿐 아니라 수입물품이 사용되는 전체 설비 등과도 관련 없는 대가가 권리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EU는 수입 후 추가된 성분, 활동 등에 대한 대가는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대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함

〈표 II-1〉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WCO	우리나라	미국	EU
지급대상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8조 제1항 (c)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CFR 제152.103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UCC 제72조 (d), (e)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2.2.2.2.2 제7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배포 또는 재판매 권리(판매조건인 경우)·복제하는 권리는 비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저작권 및 상표권 배포 또는 재판매 권리(판매조건인 경우)·복제하는 권리는 비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포 또는 재판매 권리(판매조건인 경우)·복제하는 권리 비가산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계획, 기밀방식, 공정, 설비, 경험에 관한 정보
가산요건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c)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U.S.C. 제1401a조 (b) (1)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UCC 제71조 제1항 (c)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된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
관련성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WCO 권고의견 4.1 내지 4.13 WCO 예해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eral Note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제3.4.2.2.2.2 제12항 내지 제13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제품, 특허에 의해 제작된 물품,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기계 상표가 부착된 물품 연주가 수록된 물품 지적재산권과 결합되어 있거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에 의해 제조된 물품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물품 라이선스 물품의 성분 또는 구성요소 라이선스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생산설비·산업 플랜트

〈표 II-1〉의 계속

구분	WTO·WCO	우리나라	미국	EU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8조 제1항 (c)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제152.103조 (b)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C Implementing Act 제 136조 제3항 •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주석 3. 제12항
산출방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만 수입물품에 근거하고 있다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물품의 가격에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관련 없는 대가를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만 수입물품에 근거하고 있다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후 추가된 다른 성분, 수입 후의 활동 또는 서비스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경우 적절한 조정 필요 • 라이선스 계약, 분배지역서, 통신문, 협상보고서 등의 문배 기준으로 산출 • 노하우가 이전되거나 사용될 범위를 평가하여 산출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국의 관련 사례

가. 권리사용료 여부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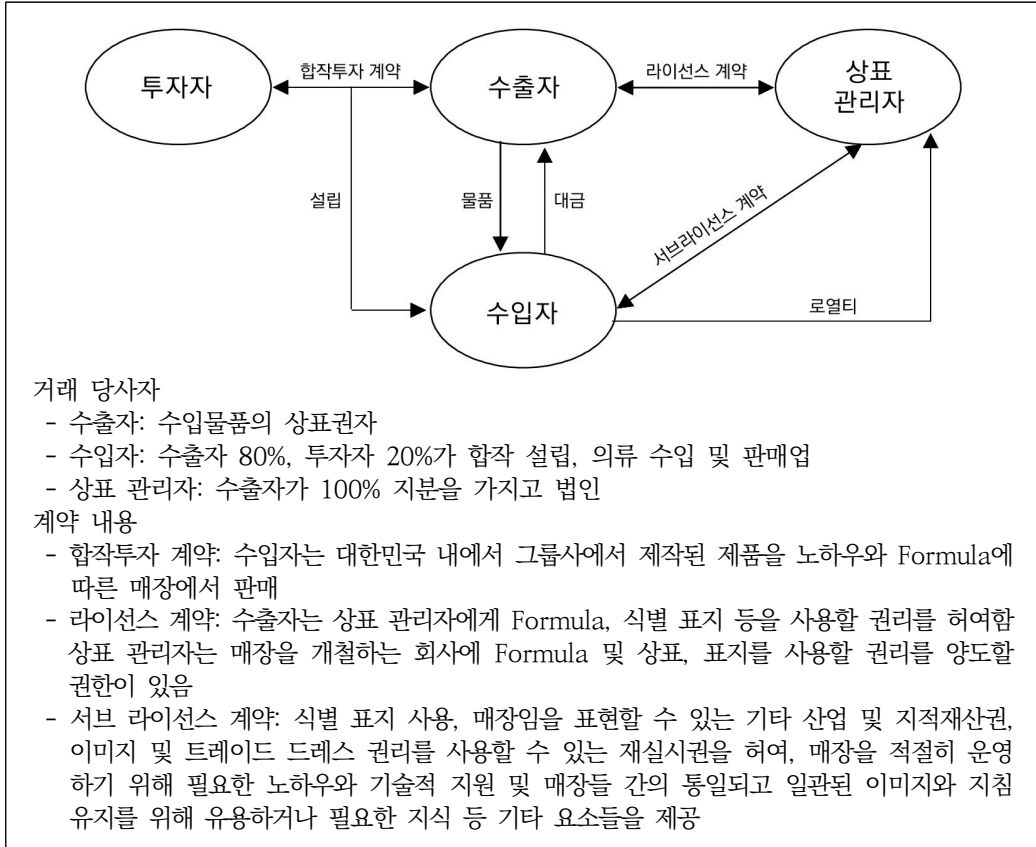
1) 매장 관련 노하우와 경영지원에 따른 대가를 권리사용료로 본 사례

가) 사례 내용⁷⁵⁾

- 수입자는 스페인에 소재한 수출자의 국내 법인으로, 수출자와 수출자의 계열사로 부터 상표를 부착한 의류, 액세서리, 신발류를 수입하여 판매함
 - 수출자는 상표와 각국의 매장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 상표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선스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함
- 수입자는 상표 관리자와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액세서리, 신발류의 국내 매출액 7%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음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로열티는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였음
- 통관지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수입자가 상표 관리자에게 지불한 로열티를 권리사용료로 판단하고 수입자가 수입한 의류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 전 통지를 하였음
 - 이에 불복하여 수입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

75)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26(2017. 1. 12. 판결)

[그림 II-2]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 거래 개요(2015구합12526)



자료: 저자 작성

-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관세청장은 당해 로열티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부분까지 포함 한 금액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과세 대상 로열티를 재 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함⁷⁶⁾
-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전체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하여 과 세 대상 로열티를 산정하여야 함

76) 적부심사 제2014-31호(결정일자: 2014. 8. 1)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은 상표 관리자가 지출한 총 비용에 수입자의 전 세계 매출 대비 비중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산정하고, 수입자에게 2차에 걸쳐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수입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우선 수입자가 상표 관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 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 이는 실질 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를 위하여 로열티 지급 계약인 서브라이선스 계약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수입자, 수출자 및 상표권자 모두 특수 관계자이므로 수출·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 수입자와 상표 관리자 간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로열티는 매장식별 표지, 매장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적 지원을 허용하는 대가임
 - 수출자와 상표 관리자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자에게 상표 및 Formula를 사용할 권한과 매장을 개척하는 회사에게 상표 및 Formula, 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양도할 권한을 부여함
 - 이에 따라 상표 관리자는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식별 표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노하우와 기술적 지원, 필요 지식 등 기타 요소들을 제공함
 - 노하우 등은 매장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한 방법, 매장 간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와 지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함

- 상표 관리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표 및 Formula, 식별 표지와 노하우 및 기

술지원은 매장 입지 선정·설치·운영·판매방법, 내·외관 디자인, 매장 내 디스플레이 등임

- Formula란 노하우, 식별 표지, 상표, 산업·지적 재산의 추가 요소들, 매장 장소의 선별·설계·장식, 매장의 레이아웃, 제품 제시, 재고관리, 상호 의존적이고 일관성 있는 총체를 포함하여 매장을 구성하고 특징 짓는 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말함
- 노하우 및 기술지원은 매장·인사·재무·법률·세무·보험 등의 관리 및 코디네이션, 매장 내·외부와 집기의 디자인, 매장 신설·입지 선정·인허가 등 건축관리, 각종 기자재 조달, 재고·주문·인사관리 등의 IT, 매장 코디 노하우 등의 이미지 제공을 포함함

□ 수출자는 매장 관련 노하우를 상표 관리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으므로 노하우 및 기술지원은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임

- 통일된 동질적 포맷으로 전 세계 매장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브랜드를 알리는 전략을 위해 수입자에게 노하우를 제공함
- 수출자는 상표 관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노하우 및 기술지원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하였고, 상표 관리자는 수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상표 관리자가 수입자에게 허여한 식별 표지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이 반영된 매장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표권의 실현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함

- 수입자 법인의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에 의하면 수입물품은 식별 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에 따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식별 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은 상표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실제지급가격의 가산조정 요소인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음

- 합작투자 계약, 라이선스 계약, 서브라이선스 계약은 식별 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 지원을 하여받아야만 수입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식별 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대가인 로열티는 상표권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수입물품은 상표가 부착된 물품으로, 로열티는 당해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상표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표가 부착된 물품과 관련성이 있음

나) 시사점

- 당해 사례에서는 수입자가 지급하는 로열티가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인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경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음
 - 즉 경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인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였음
 - 서브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 경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함께 지급되었기 때문에 총 지급 로열티 모두를 권리사용료로 간주하여 실제지급가격에의 가산 여부를 판단한 것임
- 그러나 경영 관련 서비스는 상표권 등과 구분하여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이 되는 권리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대가가 권리사용료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이나 기타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구매자가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원인에 따라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또는 가산 요소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를 결정해야 함

2) 경영지원비의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 사례 내용⁷⁷⁾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 판매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경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함
 -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자는 미국 소재의 화학회사, 당해 회사가 50% 출자한 자회사, 당해 회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임

- 수입자에 대한 사후심사에서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통관지 세관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음
 - 이에 수입자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경영지원계약서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권고와 조언을 제공하기로 하고, 수입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수출자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에는 제품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첨단기술을 수입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권고, 재무·회계·예산·전산·보험관리, 생산관리 및 자재 구매 등이 포함됨
 - 수수료는 제공받은 지원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계산됨

- 사후귀속이익이란 수입물품을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함에 따른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으로, 경영지원비를 수입 후 추가로 발생되

77) 국심 2000관0096(결정일자: 2001. 10. 24)

는 이익에 대한 일정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경영지원비 지급액과 수입금액의 비율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고, 일정 기간 제공된 서비스 대가를 계산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것임

나) 시사점

- 당해 심판청구에서는 2015구합12526 판결과 달리 경영지원비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지급가격에의 가산 여부를 판단하였음
- 심판청구와 2015구합12526의 경영지원비는 경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의 대가라는 성격은 유사하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의 명칭 및 비용의 명목이 상이하 며, 이에 따라 어떤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도 달라졌음

3) 경영지원비의 실제지급가격 또는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 사례 내용⁷⁸⁾

- 미국 소재 ABC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페인 소재 XYZ가 소유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 의류를 수입함
- 수입물품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 ABC 및 XYZ 모두와 특수관계가 아닌 생산자로부터 제조되며, ABC는 의류를 외국의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여 구매함
- ABC와 XYZ는 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XYZ는 ABC에 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하고, ABC는 그 대가로 ABC의 전 세계 총 판매액의 5%를 XYZ에 지급함

78) CBP Ruling HQ W548547(2006. 3. 7)

- 사업 운영에는 영업지원, 판촉지원, 행정 및 회계지원, 장부 및 기록의 작성 및 유지, 재무제표 작성, 채권 추심, ABC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지급, 미국 내 ABC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구성, 기타 ABC의 사업 운영 효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관리서비스가 포함됨
- 관리수수료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수수료의 지급이 수입물품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증명되어야 하지만, 당해 관리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음
 -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XYZ는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며, 판매자의 특수관계자도 아니므로 이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 또한 관리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관리수수료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이 없고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XYZ가 제공하는 관리서비스를 위한 것임
- 추가로 당해 관리수수료가 생산지원비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ABC는 XYZ의 관리서비스에 따른 지원을 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수수료는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사점

- 당해 사례와 국심 2000관0096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수입자·상표권자와 특수관계가 아니고 관리수수료를 상표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임
 -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달라짐
- 이에 따라 CBP는 관리수수료를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라,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관리수수료는 미국 내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수입 후 판매에 따라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수출자를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사후귀속이익이 될 수 없음
- 또한 CBP는 당해 관리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도 검토하였는데, 국심 2000관009에서도 경영지원비가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했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사후귀속이익과 실제지급가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후귀속이익은 수입 후 판매 등에 따른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은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을 말함
 - 국심 2000관009의 경영지원비도 물품의 수입을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입 후의 판매와 관련한 상업적인 권고와 수입물품 사용에 따른 사후적 분석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음

나. 관련성 판단 사례

1) 국내 제조 관련 영업 비밀을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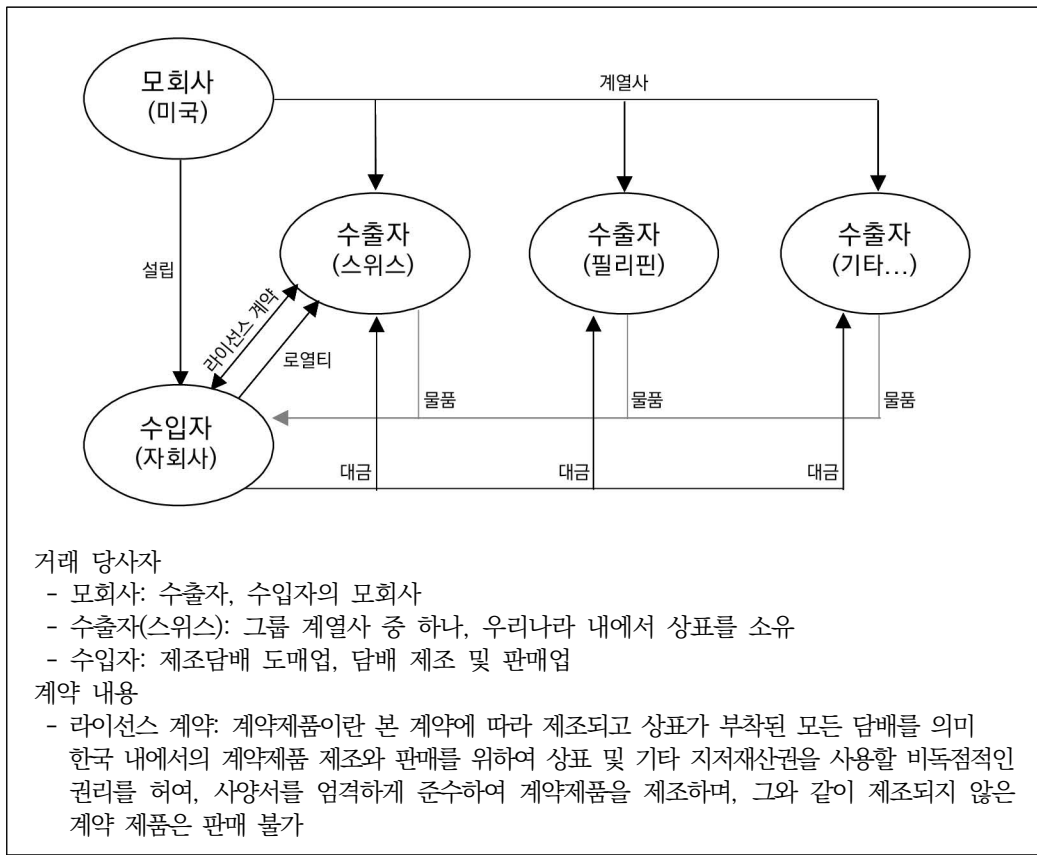
가) 사례 내용⁷⁹⁾

- 수입자는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및 담배 제조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상표가 부착된 담배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함
- 수입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각 브랜드 제품의 순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한 로열티를 지급함

79)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2015. 1. 19. 판결)

- 당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수입자는 사양을 엄격히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렇게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권리권자는 수입자가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그림 II-3] 관련성 관련 사례 거래 개요(2014누328)



자료: 저자 작성

- 서울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권리사용료를 수입하는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관세 등

을 네 차례에 걸쳐 부과처분 하였음⁸⁰⁾

- 과세 가격에 가산된 권리사용료는 담배 완제품의 가격 중 각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된 조정액을 바탕으로 가산율을 산정하여 계산되었음
-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수입자는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때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인 권리사용료는 수입 각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기타 지적재산권은 각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함

- 담배는 배합·가향·열처리·절각의 과정을 거쳐 각초를 제조한 후, 이를 켈런지로 말아 필터로 연결하면 완제품이 완성됨
 - 배합은 담배의 특징과 품질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종 담뱃잎이 지닌 향기와 맛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섞는 작업임
 - 가향은 담배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료 배합물에 당과 향료 등의 가향제와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를 가하는 작업을 말함
 - 각초를 켈런지에 말아 필터와 연결하여 포장하는 과정은 각초를 제조하는 과정에 비하여 매우 기계적이고 간단한 과정임
- 따라서 담배 완제품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대부분 각초 제조 단계에서 결정되며, 담배 완제품의 제조 기술이 체화되고 구현된 것은 각초라고 보아야 함

□ 또한 수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수출자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및 노하우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면서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각초의 제조에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각초에는 수출자의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스위스 수출자는 제품이 그룹사의 기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수준을 충족하도록

80) 기업심사 후 추가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대법원 2015두745(2020. 2. 13. 판결))

하고,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 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리고 제품 규격에 따라 담뱃잎을 전 세계에서 구입하여 계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고, 담뱃잎의 숙성과 혼합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담뱃잎을 창고에서 약 18개월 동안 보관하는 등 각초의 제조에 관여함
- 라이선스 계약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사용료에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나) 시사점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이 완제품의 제조에 관한 지식재산권이라면 과세되지 않음
 - 완제품의 제조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그러나 당해 사례에서는 당해 지식재산권이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인 수입물품 과도 관련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보아 과세함
 -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수입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타 지식재산권을 허여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제조 영업비밀의 일부는 원재료의 제조, 품질관리 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에 따라 실제 국내 생산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부분은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수입물품인 원재료의 가격, 완제품의 가격 등을 산정하여 조정액과 가산율을 적용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안분하였음
- 반면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 중 하나인 상표 사용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사용료 전체를 안분하였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함

-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당해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국내에서 수행되는 완제품 제조 공정이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과 같은 경미한 가공이 아니라면 상표 사용의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당해 사례에서는 상표 사용의 대가도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도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김
- 수입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볼 때 국내에서 수행되는 제조 공정은 경미한 가공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수입자는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국내 제조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영업비밀이 국내 제조와 일부 관련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상표 사용의 대가는 수입물품과는 관련 없이 국내 제조된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가 완제품의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와 같이 권리사용료가 둘 이상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때에 각 권리와 수입물품과의 관련 여부가 상이한 경우, 권리사용료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즉 하나의 권리는 완제품과 수입물품 모두와 일부 관련되고, 다른 하나의 권리는 완제품과 관련되지만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우선 각 권리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간접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리사용료를 구분하였다면 완제품만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2) 국내 제조 관련 노하우를 수입물품과 관련 없다고 본 사례

가) 사례 내용⁸¹⁾

- A는 B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모회사인 B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A와 B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A는 B에게 수입물품의 대금에 추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음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B는 A에게 독점적 권리, 독점적 정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허여하며, A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함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현금 및 거래 할인, 반환금, 비용, 판매세, 소비세, 기타 유사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임
 - B 또는 관련 계열사로부터 구매한 후 A가 재판매하는 중간재와 화합물 및 화학적 생산품의 금액은 제외함

- 우선 당해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로열티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임
 - 라이선스 계약서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음
 - 로열티의 지급 의무는 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A가 판매하는 때에 발생하며, 물품을 수입 및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음

- 또한 로열티 산출방법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 및 수입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81) CBP Ruling HQ W548649(2006. 9. 5)

- 로열티를 결정하는 기초인 순매출액에는 A가 구매한 후 추가적인 가공 없이 재 판매하는 중간재 또는 화합물 및 화학적 생산품에 대한 금액은 제외됨
 - 따라서 로열티는 국내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이며, 화학물질을 구매 및 수입하는 권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님
- 다음으로 당해 로열티가 권리사용료로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아야 함
- 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A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로열티의 지급과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임
 - 로열티는 국내외 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여 새롭게 생산된 완제품과 관련한 노하우, 상표 및 특허를 위해 지급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로열티는 수입화합물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수 없음

나) 시사점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과 관련한 노하우, 상표,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사례임
- CBP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하우, 상표, 특허를 위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다. 배분 방법 관련 사례

1)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례 내용⁸²⁾

- 수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로부터 LCD 유리기관의 생산설비에 포함되는 기계, 부분품 등을 수입하고, 수출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수입자와 수출자의 라이선스 계약은 여러 차례 개정·발효되었으며, 수입자는 LCD 유리기관 소판·연마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허여받음
 - 수입자는 각 계약서에 따라 순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율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였음

- 세관은 수입물품이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되었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어야 한다고 봄
 - 이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총 로열티를 수입설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부과 고지함
 - 권리사용료가 특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물품이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로 보아 안분함

- 이에 수입자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해 처분에 불복함
 - 지급하는 로열티는 제품 개발, 원료 선정에서 완제품 검사·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특허·노하우의 실시와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것임
 - 또한 로열티는 수입설비와 관련 없는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며,

82) 대법원 2016두34110(2019. 2. 14. 판결)

이를 구분하여 설비에 관한 로열티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로열티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법원은 수입설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대가가 포함된 경우 당해 로열티 전부를 수입설비 비율로 안분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권리사용료를 전체 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한 규정은 권리사용료가 전체 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 수입설비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만 가산한다는 취지임
 - 당해 로열티와 같이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
 - 수입설비 등과 관련 없는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수입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해 로열티 가운데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나) 시사점

- 당해 판결의 의의 중 하나는 공정관리 노하우, 사업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같은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는 전체 설비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인 경우 역시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완제품과도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또한 당해 판결은 일부 설비 등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조정액 계산공식의 기본값이 되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명백히 함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의 단서 나목을 신설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수입 후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를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음
 - 그러나 수입물품이 부분품 등인 경우 조정액을 산출하는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입부분품 등에 대하여도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당해 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검토해야 함

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사례

가) 사례 내용⁸³⁾

- GE 그룹사에 속한 GE 독일은 Monogram Licensing International과 표준양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GE 독일이 생산, 판매 및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GE 그룹의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음
 - GE 독일은 권리 사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생산, 판매 및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품질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Monogram은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 GE 독일은 매년 12월 31일 GE 상표 사용의 대가로 연간 매출액의 0.95%, GE 그룹의 상표명 사용의 대가로 연간 매출액의 0.05%의 로열티를 지급함

- 세관 심사에서 같은 계열사 사업자로부터 제3국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계산한 관세

83) Case C-173/15 GE Healthcare GmbH v Hauptzollamt Düsseldorf

를 부과하지 함

- GE 독일은 해당 관세를 납부한 후 당해 로열티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님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세관은 이를 각하함
- 이에 불복하여 GE 독일의 승계법인인 GE Healthcare는 당해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독일 뒤셀도르프 금융법원은 로열티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또한 수입물품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로열티의 경우 거래가격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배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도 하였음
 - 이러한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함
- 우선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에 GE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수입물품과 로열티는 관련 있음
 - 라이선스 계약에는 물품이 수입된 후 제공되는 서비스와 GE 그룹의 상표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물품이 수입된 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므로 수입물품과 일부만 관련 있음
 - 비록 관세평가 대상인 수입물품과 로열티가 부분적으로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일부만 관련 있고 수입 후에 추가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나 수입 후의 활동 또는 서비스와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배분되어야 함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다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관세 평가를 하여야 함
- 세관은 수입자로부터 로열티의 조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
 -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자가 관련된 회계연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다른 회계연도의 회계 데이터를 인정하여야 함
 - 당해 데이터는 합리적인 방법에서의 합리적이라는 의미와 국제협약 및 규정의 원칙 및 일반 규정과 일치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구성함
- 다만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로열티를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다른 회계연도의 데이터가 적용된 것은 대체 방법인 합리적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다른 회계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님
 - 다른 회계연도의 데이터를 기초로 배분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정보의 제공 면에서 수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적절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임

나) 시사점

- 당해 사례는 수입물품과 일부만 관련 있는 로열티를 배분할 때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회계연도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회계연도 데이터를 인정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이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이 계약서, 관련 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계 데이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안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회계데이터상의 원가, 비용 등의 금액을 근거로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및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음

Ⅲ.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과세 시 문제점

1. 지급방법에 따른 과세방법

- 일반적으로 권리사용료는 권리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됨
 -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한 대가로 권리권자는 권리사용료를 지급받음

가. 계약 형태에 따른 가산 요소

- 권리권자가 권리를 이전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 이외의 활동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활동 등의 대가는 계약 형태에 따라서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금액 중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 사례를 살펴봤을 때 활동 등의 제공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약정하는 경우 어떤 가산 요소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 수입자와 권리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수입자가 제공받는 권리에 지식재산권 외 경영지원과 같은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회계·총무 지원, 영업지원 등과 같은 경영 일반에 관한 지원의 대가는 지식재산

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함께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라는 명목으로 권리권자에게 지급됨

- 이러한 경우 관세평가 시 경영지원과 같은 활동 등의 대가를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구분 없이 「관세법」상 가산 요소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즉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함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권리 사용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지식재산권 사용 대가와 함께 이루어짐
- 따라서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권리사용료로 인정되면 경영지원 비용 또한 권리사용료로 간주되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영지원 비용은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지원 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 반면 라이선스 계약과 별도로 경영지원 계약, 관리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또는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즉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계약 당사자와 수입물품 생산자와의 관계, 지급 대상이 되는 용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격 포함 여부를 결정함
 - 일반적으로 경영지원 비용이나 관리서비스 대가는 수입물품의 수출판매가 아닌 수입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 또는 가산 요소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경영지원과 같은 활동 등의 대가가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미루어 권리사용료로 간주하기 전에, 당해 대가가 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활동 등의 대가와 권리 사용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를 검토하는 때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부터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지원과 같은 활동 등의 대가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권리사용료로 간주되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활동 등의 대가가 권리사용료로 간주되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가격이나 다른 가산 요소에 해당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활동 등의 대가가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이거나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할 수 있음
 - 즉 경영지원 비용과 같은 활동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어야 함

나. 지급방식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한편 관련 계약서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대가와 관련되지 않는 대가를 구분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거나 수입물품과 일부만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그 대가를 구분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 가산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대체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가령 라이선스 계약에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상표권의 사용과 경영지원의 대가로 각각 당해 수입물품의 순매출액의 5%, 3%를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 순매출액의 5%만 권리사용료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
 - 라이선스 계약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권리사용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됨
 - 이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
- 반면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표권의 사용 및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입물품의 순매출액의 8%를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부인될 수 있음
 - 라이선스 계약서만으로는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상표권의 사용 대가를 구분할 수 없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을 산출할 수 없음
 - 기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이와 같이 계약의 실질이 동일한 경우라면 대가의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관세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계약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로열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로 다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수입자가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입자가 스스로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신고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인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수입물품 유형별 안분 방법

- 관세청은 수입 이후 국내 활동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기 위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으나 특허의 일부 공정만 수행하는 설비의 경우에만 당해 금액의 공제 규정을 명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수입물품이 ① 완제품 ②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 ③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 ④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설비 등의 규정만 개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완제품, 특허를 실시하는 설비 등,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이 수입되는 때 지급되는 수입 후 국내 활동과 관련한 대가는 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가.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

- 수입물품이 완제품 또는 특허를 실시하는 전체 설비 등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는 현재 규정을 통하여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완제품, 전체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만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공정 관리 노하우, 사업 운영 노하우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

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완제품의 부분품 등

-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가 수입되는 경우,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에 포함된 수입 이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는 규정의 필요성은 현재 규정을 통하여 당해 대가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 수입부분품 등의 경우도 완제품, 전체 설비 등과 같이 현행 규정으로 당해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공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여야 함
 - 산출 규정은 ①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②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③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임

- 먼저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제외되어 있다면 공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수입자가 지급하는 총 권리 사용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됨
 - 완제품, 전체 설비 등의 규정과는 다르게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는 표현⁸⁴⁾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가산율을 산출하는 공식⁸⁵⁾에서도 ‘총지급 권리사용료’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완제품과 관련 있는 권리 사용료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84) 수입물품은 부분품 등이지만 완제품에 대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부분품 등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규정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라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는 표현이 적절함

8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 가목

- 다음으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은 완제품과 관련 없는 활동이므로 산출 규정의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의 의미가 완제품과 관련 없다는 의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이는 동일한 의미가 아님
 - 예를 들어 상표 사용의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수입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당해 권리사용료는 완제품과 관련 있지만 수입부분품 등과는 관련이 없음
 - 이 경우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조립·혼합·희석·분류·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경미한 작업이 아니어야 함
 - 이와 같이 완제품과는 관련 있지만 수입부분품 등과는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다는 의미가 완제품과도 관련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에 공정관리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생산 등의 활동은 완제품과 관련 있는 활동이지만 공정관리 등 수입 이후의 활동은 완제품과도 관련 없는 활동임
 - 생산 등의 활동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된 활동 및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정 관리·사업 운영 노하우 등과 같이 완제품과 무관한 활동에 대한 규정은 아님

- 이에 따라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을 수입 이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는 대가 역시 산출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과세됨
 - 이는 대법원 2016두34110 판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이므로 당해 산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부분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제품과 관련 없는 수입 이후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를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일부 공정을 실시하는 수입설비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을 추가하거나 설비와 부분품 등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함

3. 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권리사용료인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지, 당해 금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하여야 함
 - 이에 대한 검토를 수입자가 스스로 수행하여 정확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또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그러나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가격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게다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구분하여 정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음
 - 이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납세 협력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을 부담하여야 함

- 반면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방법을 따르는 경우도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정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이 경우 심사 또는 조사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건에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세관장은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수입자는 당해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세관공무원의 심사 또는 조사 결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⁸⁶⁾

86) 「부가가치세법」 제35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당해 지침 제12조에서는 관세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사용료 등과 같은 가산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 수입자가 가산 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 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 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수입자가 가산 요소 금액의 누락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안분하는 데 있어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수입자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납세 협력비용, 부족세액 추징 위험, 가산세 납부 등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거나 수입자 스스로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Ⅲ.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과세 시 문제점 63

- 가산 요소와 관련하여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어려움을 인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규정을 보았을 때, 가산세의 감면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의 정비

가. 총지급 권리사용료 의미 명확화

-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 등 또는 특허를 실시하는 설비 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가 수입되는 경우 관련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라는 용어가 사용됨
 - 부분품 등과 일부 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 위해 안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고 명시함으로써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가 지급하는 총 권리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평가 대상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 조정액과 가산율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⁸⁷⁾에 직접적으로 총지급 권리사용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과 관련되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거나 신설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완제품 등과 관련 없는 대가 역시 당해 규정이 정

8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

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기 때문임

-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없는 대가인 공정 관리·사업 운영 노하우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 등이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⁸⁸⁾

- 이와 같이 일부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관련 없는 대가의 공제를 규정함에 따라 완제품, 부분품 등, 전체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공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음
 - 대법원 2016두34110의 판결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가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할 규정이 없어 당해 대가를 구분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완제품, 전체 설비 등이 수입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만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
 - 완제품과 전체 설비 등의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에는 수입자가 지급하는 총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일부 설비 등 규정에 신설된 조항의 필요 없이 완제품 등의 규정과 이와 유사한 문구를 부분품 등, 일부 설비 등의 규정에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또는 ‘전체 방법 등을 실시하는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로 개정하는 것임
 - 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산율 산출 공식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각각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체 방법 등을 실시하는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로 개정하여야 함

88)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나목

〈표 IV-1〉 총지급 권리사용료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p> <p>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p> <p>가.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설비에만 관련된 방법에 관한 특허 등의 대가인 경우: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권리사용료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p> <p>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설비에만 관련된 방법에 관한 특허 등의 대가 외에, 공정 관리·사업 운영 노하우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 등을 포함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p>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p> <p>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p> <p>가. (삭제)</p> <p>나. (삭제)</p>

〈표 IV-1〉의 계속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u>공제한 금액(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u></p> <p>4.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p> <p>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p> $\cdot \text{조정액} = \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물품가격}}{\text{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cdot \text{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p>나. 수입물품이 제3호 기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p> $\cdot \text{조정액} = \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 $\cdot \text{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p>다. 수입물품이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p> $\cdot \text{조정액} = \frac{(\text{총지급 권리사용료} - \text{공정 관리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권리사용료}) \times \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 $\cdot \text{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p>4.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p> <p>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p> $\cdot \text{조정액} = \frac{\text{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text{수입물품가격}} \times \frac{\text{수입물품가격}}{\text{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cdot \text{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p>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p> $\cdot \text{조정액} = \frac{\text{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text{수입설비가격}} \times \frac{\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 $\cdot \text{가산율} = \frac{\text{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 <p>다. (삭제)</p>

자료: 저자 작성

- 또는 수입부분품 등의 규정도 일부 설비 등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경영지원 비용과 같은 대가는 공제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공제 규정에서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지원과 같은 활동은 수입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외에서도 당해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함

- 따라서 일부 설비 등의 공제 규정으로는 수입 전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포함하는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 경우 경영지원 비용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와 명백히 구분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부인되고 다른 대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또한 일부 설비 등에 대한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공제 규정에 전체 설비 등의 가격에서 일부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전체 설비 등과는 관련 있지만 일부 설비 등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안분할 수 없음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가산율 산출 규정에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에서 수입된 일부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오류로 보임
 - 이와 같이 현행 규정 역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동일하게 수입부분품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분하여 공제하기 위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의미하는 표현을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공제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경영지원 비용과 같은 비용이 총지급 권리사용료에서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음

나.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 정비

-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규정⁸⁹⁾은 완제품과 관련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를 포함한 경우 이러한 활동대가를 제외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생산 등의 활동대가를 제외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경우, 당해 금액만을 산출하여 가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등의 활동대가는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이므로, 부분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 가산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이를 제외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다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면 안 되고 따라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등의 활동대가를 제외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과 관련이 없어도 당해 규정을 통하여 권리사용료의 일정 부분이 가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수입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때에 상표 사용 대가의 일부를 수입부분품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 권리사용료는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지만 당해 규정을 통하여 안분된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89)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 또한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사례와 같이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이 둘 이상의 권리인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되지만 수입부분품 등과는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과세될 수 있음
 - 사례에서 담배의 제조 노하우·영업비밀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는 담배 완제품 뿐 아니라 일부분은 수입 원재료인 각초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노하우 등의 대가는 당해 규정을 통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함
 - 반면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는 상표는 수입 원재료와는 관련 없으므로 각초가 수입되는 때에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는 가산하면 안 되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당해 규정에서는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부분이 가산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완제품에 부착되는 상표에 대한 대가의 일부도 수입부분품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
 - 이러한 경우 또한 대법원 2016두34110의 판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가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당해 단서가 완제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 중 일부가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함
 -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완제품에 구현된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부분품 등과는 일부만 관련 있는 경우’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는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부분품 등과 일부만 관련 있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IV-2〉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 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u>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u></p>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 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u>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완제품에 구현된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부분품 등과는 일부만 관련 있는 경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u></p> <p>또는,</p> <p>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u>국내에서 생산될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부분품 등과 일부만 관련 있는 경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u></p>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규정을 수정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부착되는 상표에 대한 대가와 같이 수입물품과는 관련 없지만 완제품과는 관련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임

- 더불어 둘 이상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완제품과는 관련 있지만 수입부분품 등과는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안분하기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짐
 - 완제품과 관련되고 수입부분품 등과 일부만 관련된 권리와 완제품과 관련되지만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후자는 당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해 대가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둘 이상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완제품 및 수입부분품 등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안분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간접적인 안분 방법 도입

- 앞서 검토한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산출의 기본값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완제품 등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직접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 완제품, 수입부분품 등(부분품 등에만 관련된 경우), 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하는 규정⁹⁰⁾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음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총 지급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하여야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 또한 수입부분품 등(일부만 관련된 경우)과 일부 설비 등에 대한 규정⁹¹⁾은 수입

9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9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직접 구분할 수는 없지만,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적용함

- 그러나 최근 권리사용료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지급 권리사용료에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분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일부만 관련된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간접적으로 안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김덕기(2019),⁹²⁾ 서영진(2019)⁹³⁾은 부분품 등, 일부 설비 등과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별로 수입부분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모값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다양할수록 분모값이 증가하여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한 권리사용료의 비중이 작아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으로, 분모값은 다음과 같음
 -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수입물품뿐 아니라 국내 생산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원가(고정자산 취득원가)⁹⁴⁾
 -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수입물품뿐 아니라 국내 생산, 판매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원가(고정자산 취득원가)와 광고비의 합계
 -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수입물품뿐 아니라 국내생산, 경영지원활동 전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원가(고정자산 취득원가)와 판관비의 합계
 -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수입물품뿐 아니라 수입 이후의 모든 국내 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액

92) 김덕기,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 방법에 대한 연구」, 2019년 제5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2019. 11, pp. 88~92.

93) 서영진,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 2019년 제33차 관세평가포럼, 2019. 6, p. 49 및 p. 53.

94) 김덕기(2019)는 일부 공정을 실시하는 수입 설비와 관련되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던 전체 설비 등의 가격을 고정자산 취득원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였음

- 이러한 방법은 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완제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직접 구분하지 못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당해 방법은 현행 권리사용료 안분산식을 확장한 방식으로,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사용료와 수입 이후 활동에 대한 대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적합하지 않음
 - 현행 규정은 완제품 등과는 관련 있지만 부분품 등과는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만, 수입 이후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부분품뿐 아니라 완제품 등과도 관련 없는 금액임
 -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 또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는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는 관련되지만 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과는 관련 없는 대가임
 - 반면 공정 관리·사업 운영 노하우 등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관한 대가는 부분품 등, 일부 설비 등뿐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공정 등이 완성되는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와도 관련 없는 대가임
 - 이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대가를 동일한 방식의 안분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수입물품의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매출액에서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과 관련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로 보는 방법임

- 예를 들어 권리사용료에 판매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매출액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안분한 금액을 판매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로 간주하는 것임
- 이 경우 총지급 권리사용료에서 산출된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음
- 수입물품이 부분품 등 또는 일부 설비 등인 경우 조정된 권리사용료에 완제품 또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에서 부분품 또는 일부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사용료로 산출함

〈표 IV-3〉 간접적인 안분 방법 도입안

개정 전	개정 후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신설〉</p>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¹⁾ 5. <u>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어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함</u> 가. <u>수입물품이 제1호,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u> · 조정액 = $\frac{\text{총지급}}{\text{권리사용료}} - \left(\frac{\text{총지급}}{\text{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관련 없는 활동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text{완제품의 매출액}} \right)$ 나. <u>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u> · <u>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u> = $\frac{\text{총지급}}{\text{권리사용료}} - \left(\frac{\text{총지급}}{\text{권리사용료}} \times \frac{\text{관련 없는 활동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text{완제품의 매출액}} \right)$ · 조정액 = $\frac{\text{완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text{수입물품가격}} \times \frac{\text{수입물품가격}}{\text{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p>

〈표 IV-3〉의 계속

개정 전	개정 후
	<p><u>다.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u></p> <p>· 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리사용료 = $\frac{\text{총지급}}{\text{관리사용료}} - \left(\frac{\text{총지급}}{\text{관리사용료}} \times \frac{\text{관련 없는 활동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text{전체 설비 등의 매출액}} \right)$</p> <p>· 조정액 = $\frac{\text{전체 설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리사용료}}{\text{관리사용료}} \times \frac{\text{수입설비가격}}{\text{전체 설비 등 가격}}$</p> <p><u>라. 관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이 전하는 바에 산출함</u></p> <p>· 가산율 = $\frac{\text{가목 내지 다목의 조정액}}{\text{수입물품가격}}$</p>

주: 1) 〈표 IV-1〉 내지 〈표 IV-2〉의 개정안 참조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관리사용료가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수입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는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입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

3. 수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가. 가산세 감면 허용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 그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경우 등 세관공무원은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이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입자는 부족세액뿐 아니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의 산출은 수입자가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⁹⁵⁾하고 있으며, 권리사용료 산출의 어려움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사례에 대하여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⁹⁶⁾
 - 수입자는 모회사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판매·경영·관리 등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특허를 제공받고 국내 순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함
 - 또한 모회사와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기술이 구현된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당해 로열티를 가산하지 않음

95) 「관세법」 제42조의 2 제1항 제8호

96) 조심 2019관0005(결정일자: 2019. 7. 24)

- 이에 따라 세관장은 과세되어야 할 로열티를 계산하여 부과 고지하였으며, 수입자는 이를 납부하면서 가산세에 대한 부과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세관장은 이를 거절하였음
- 이에 불복한 수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관세 등을 신고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제조설비와 로열티 간의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로열티의 과세 대상 여부 및 적정 안분산식을 가리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 요소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어려움을 인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준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임⁹⁷⁾
 - 또한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 당해 운영지침도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 요소와 관련하여 구체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준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나. 권리사용료 관련성 판단 기준의 제시

-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기 위하여 당해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검토하는 것은 조심 2019관000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97) 대법원 2006주7133(2006. 8. 24. 판결)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명시하고 있음
 - 특허발명품,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 상표가 부착된 물품, 가사·선율·영상 등이 수록된 물품은 지급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음
 - 또한 영업비밀 등과 같은 기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함

-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사례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에서 명시한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실제로 제공받는 권리의 대상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
 -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담배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을 허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담배의 원재료인 각초의 생산·구매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도 포함되므로 이를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의 두 가지 질문 ① 수입물품이 특허에 따라 제조되었는지 ②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판단함
 - 당해 두 가지 질문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당해 로열티의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님

- 상기의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사례를 미국의 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특허에 따라 수입물품이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각초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답변됨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권리는 담배 제조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당해 지식재산권에 담뱃잎과 각초의 재배 및 구매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에 의한 것은 아님

- 두 번째 질문인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도출됨
 - 담배 재배 농가의 관리, 담뱃잎의 구매, 각초의 배합 비율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가 지급되므로, 당해 로열티는 각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과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보다 미국의 규정을 따르면 용이한 판단이 가능함
 -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스스로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 김덕기,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 방법에 대한 연구」, 2019년 제5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2019. 11.
- 서영진,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 2019년 제33차 관세평가포럼, 2019. 6.

CBP, General Notices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Vol. 27, No. 6, Customs Bulletin and Decisions, 1993. 2. 10.

Taxation and Customs Union,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2016. 4. 28.

_____, “Customs Valuation Compendium”, Taxation and Customs Union, 2018.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26(2017. 1. 12. 판결)

국심 2000관0096(결정일자: 2001. 10. 24.)

대법원 2006주7133(2006. 8. 24. 판결)

대법원 2015두745 (2020. 2. 13. 판결)

대법원 2016두34110(2019. 2. 1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2015. 1. 19. 판결)

적부심사 제2014-31호(결정일자: 2014. 8. 1.)

조심 2019관0005(결정일자: 2019. 7. 24.)

Case C-173/15 GE Healthcare GmbH v Hauptzollamt Düsseldorf

CBP Rulings HQ H234735, 2014. 6. 23.

CBP Ruling HQ W548547, 2006. 3. 7.

CBP Ruling HQ W548649, 2006. 9. 5.

CBP Rulings HQ W563354, 2010.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CBP, <https://www.cbp.gov>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home_en

WCO, <http://www.wcoomd.org>

관세연구 19-04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호 · 이재선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628-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9-04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